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따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사진촬영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의정 홍보팀	○ 의정 홍보 사진 촬영 ○ 사진자료 관리·제공 ○ 사진편집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및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안부 예규 제 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의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강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
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부장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
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직무자격 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사진촬영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우대사항	☐ 필수요건 - 행사 촬영 업무특성상 토요일(공휴일) 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맞춰서 근무가능 한 자 ☐ 우대사항 - 사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사진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사진편집 가능)

※ 시험공고일 현재 “실무경력 인정 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될수 있음에 유의)

※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기준 응시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 및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근무 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09:00~17:00)

○ 채용기간 :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상황에 따라 근무방법 등이 변경되어, 주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주말·공휴일 근무 발생 가능

○ 근무장소 : 도봉구의회 의회사무국 1층 의정홍보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에

서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2026년 기준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4,334천원	38,759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보험가입: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공고

- 공고기간: 2026. 10. 2.(금) ~ 10. 16.(금)
- 공고방법: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0. 16.(금)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포트폴리오는 USB 및 출력본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수입증지 소인(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후 응시원서 접수(도봉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1층)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불가
- 접 수 처: 도봉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1층)
【(우)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원서교부: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 시험일정

서류심사 (일시, 장소)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면접심사 및 실기 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2026. 10. 22.(목) 15:00 (도봉구의회 제1위원회실)	2026. 10. 23.(금) 17:00(예정)	2026.10.29.(목) 14:00	도봉구의회 제1위원회실	2026.10.30.(금) 17:00(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공고 실시 예정

○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면접심사 및 실기시험

- 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개별 심층면접과 포트폴리오 심사, 실기시험(사진촬영 등)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예비포함) 발표: 개별통보 및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도봉구 수입증지 5,000원**(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납부)
-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하여야 함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에 유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를 통해 근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최종 합격 시 원본 지참
-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근무이력 및 기간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최종 합격 시 원본 지참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 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포트폴리오([붙임] 3 파워포인트 서식 참조)**

- ▶ **내 용**: 본인이 작업한 사진촬영본 및 직무수행 결과물에 한함
- ▶ **제출방법**: 접수기간 내 제출
- ▶ **제출형식**: 10장 이내 사진 파일(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첨부)
(필수) 행사 및 홍보 사진 3매, 인물사진 3매, 자유사진 3매
- ▶ **유의사항**: 제출 후 제출한 내용 수정 및 보완 불가
- * 제출한 자료는 심사수단 이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입증자료 사본 제출),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3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면접시험 점수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시험 응시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응시자 본인에 대한 면접위원 전체의 상·중·하 개수 또는 전체 (평균)점수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정요소에 한하여 공개하며, 공개방법은 응시표 상의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 까지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도봉구의회에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정홍보팀으로 (02-2091-4722)로 문의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	선발예정인원
도봉구의회	사진촬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의회사무국	1명

주요 업무	○ 의정홍보 사진촬영 ○ 사진자료 관리제공 ○ 사진편집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등
-------	--

필요 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의사소통 및 팀워크 등 ○ 기획력 ·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 창의력, 분석력, 콘텐츠 기획 · 제작 열량
-------	--

필요 지식	○ 촬영 장비에 대한 지식, 포토샵 등 관련 프로그램 활용 지식과 경험 ○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과 경험
-------	--

응시자격 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사진촬영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사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 필수요건 - 행사 촬영 업무특성상 토·일요일(공휴일) 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맞춰서 근무가능 한 자 ☐ 우대사항 - 사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사진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사진편집 가능)
------------	--